

# 광주영상콘텐츠 로케이션제작지원사업 관리규칙

제 정 2024. 3. 14.(원장승인) 규칙 제57호  
개 정 2024. 9. 13.(원장승인)  
개 정 2024. 11. 13.(원장승인)  
개 정 2024. 12. 10.(원장승인)

△ 영상·영화사업국

## 제1장 총 칙

제1조(지원 근거 및 목적) 이 규칙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 제10조(제작자의 제작 지원)에 따라, 광주광역시 문화콘텐츠진흥조례 제5조(제작자의 지원) 및 제15조(사무의 위탁), 광주광역시재단법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사업)와 제8조(재산출연 등) 및 제11조(업무의 위탁), 진흥원 정관 제2조(목적) 및 제4조(사업)를 근거로, 우리 지역 영상·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이하 '지원 사업' 이라 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행·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콘텐츠' 라 함은 실사 촬영과 컴퓨팅 그래픽 기술 등을 통해 제작한 영화, 드라마, 뮤직비디오, 광고·홍보 등의 실현 가능한 영상 작품을 말한다.
2. '로케이션' 이라 함은 영상콘텐츠를 광주광역시(이하 '지역' 이라 함) 내의 옥외나 스튜디오 내 세트에서 촬영하는 영상제작 방식을 말한다.
3. '인센티브' 라 함은 영상콘텐츠의 광주광역시(이하 '지역' 이라 함) 내에서 촬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소비된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4. '로케이션 제작지원' 이라 함은 지역 내에서 제작비 소비촉진, 지역 영상산업육성, 지역의 관광자원 홍보 등을 위하여 국·내외 영상콘텐츠 제작자에게 영상제작비 중 지역 내에서 소비한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지원 등 제반 사업을 말한다.
5. '위탁기관' 이라함은 '광주광역시' 를 말한다.
6. '관리기관' 이라 함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관리를 위하여 위탁기관의 위탁사

무를 전담하여 관리하는 ‘진홍원’ 을 말한다.

7. ‘신청기관’ 이라 함은 지역 내에서 영상콘텐츠의 로케이션 촬영 및 제작에 참여하는 업체 중에서 본 지원 사업 지원신청 당사자를 말한다.

8. ‘사후지원금’ 이라 함은 본 지원사업의 규칙에 따라 신청한 소비인정금액 중 일부로서 관리기관이 신청기관에 협약서에 기재된 지급방법으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9. ‘환수금’ 이라 함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재조치 등에 따라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관리기관에 납부, 변제하여야 할 상환금액을 말한다.

※<별표1>. 제재대상 사유별 제재조치

10. ‘제작’ 이라 함은 기획·개발·생산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유형의 영상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11. ‘제작사’ 라 함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개인·법인 등을 말한다.

②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방송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상진흥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우리 지역에서 촬영 및 제작하는 영상 콘텐츠의 제작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광고·홍보영상은 촬영장소나 지역의 홍보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위탁기관이나 관리기관이 전략적으로 추진할 경우, 본 지원 사업 관리 규칙 제5조 (지원규모), 제6조 (지원조건 및 방식)와 상관없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평가의 결과에 따라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제4조(지원대상 및 자격)** ① (공통사항)국내외 영상 콘텐츠 제작 사업자로서 극장 개봉과 OTT(시리즈물 포함) 방영을 목적으로 하는 영화나 지상파·CATV 등의 방송과 OTT 방영을 목적으로 하는 드라마, 뮤직비디오·광고·홍보 등의 영상 제작사를 대상으로 한다. 단, 국내 영상 콘텐츠의 경우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또는 영화제작업 신고를 필한자에 한한다.

② (공통사항)배급 확정 또는 계약이 되어 극장이나 OTT를 통해 개봉될 영화, 편성 확정 또는 계약이 되어 미디어(지상파, CATV, OTT 등)를 통해 방영될 드라마, 대중매체를 통해 장기(3개월 이상) 방영이 확정 또는 계약된 뮤직비디오·광고·홍보 영상 등으로 지역 내에서 3회차 이상 촬영한 영상콘텐츠이어야 한다.

③ (공통사항) 관리기관은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영상콘텐츠의 촬영 이전에

신청기관과 협약 또는 합의를 해야 한다.

④ 지원 금액 확정시 배급, 개봉, 방영 등에 관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증빙해야 한다.

**제5조(지원규모)** ① ‘사후지원금’은 제작(작품)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본 지원 사업은 신청기관의 작품에 대하여 당해 연도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제6조(지원조건 및 방식)** 제4조의 지원 대상 및 자격에 해당하는 신청기관 작품의 순수 제작비용을 대상으로 제5조의 지원규모와 제22조의 지원비 산정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7조(참여제한)** ① 관리기관은 지원신청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가 체납 중이거나, 광주광역시나 광주광역시 산하기관과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신청기관과 대표자 및 책임자에 대하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과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지원 사업 시행에 대한 참여제한 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영화·드라마 등 영상콘텐츠의 촬영 이전에 관리기관 담당부서와의 문서상 협약 또는 협의를 하는 경우 당해 지원자격을 제한 또는 박탈할 수 있다.

## 제2장 사업의 관리체계

**제8조(관리 및 평가)** <개정 2024. 11. 13.>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평가 및 조정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사후지원금’ 지원은 필요 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2. 신청기관 및 작품 관리, 제작시행 확인 및 지원 사업 진행
3. 필요시 지역 내 소비액의 공인회계 정산보고서(정산내역, 증빙자료 등) 검토 및 평가
4. ‘지원사업 협약서’ 내용의 이행 여부에 대한 중간감사 및 결과보고에 대한 평가
5. 신청기관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6. 지원사업의 자문

7. 기타 공정한 사업시행과 관리를 위해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관리기관)** 신청기관이 제출한 신청서, 제작계획서, 평가를 위한 기본자료 및 결과 보고서 접수, 신청기관 및 작품의 관리, 제6조와 제8조에 해당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개정 2024. 11. 13.>

**제10조(신청기관)** ① 신청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신청 작품의 지역 내 로케이션 제작, 편성 또는 배급 등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 및 책임
2. 광주광역시내 소비 제작비의 정산내역 및 증빙자료와 협약서 내용 이행에 관한 증빙자료 관리 및 보고
3. 보안에 관한 종합관리 및 관계법령의 준수
4. 관리기관과 협의를 통한 제작발표회, 제작보고회, 종영식, 시사회 등과 같은 유형의 행사 개최 및 언론 홍보 활동 협조

② 두 개 이상의 제작사가 함께 시행하는 공동제작(이하 “공동제작사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 중 지원에 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시행하는 기관을 신청기관으로 한다.

③ 신청기관의 장은 작품 제작을 총괄하여 시행하는 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하며,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관련 기본서류의 작성 및 제출
2. 제작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3. 제작시행 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제작의 진도, 중간, 결과보고, 성과 활용 협의 및 이행
5. 광주광역시내 제작비 소비액에 대한 공인회계 정산보고서, 정산내역, 증빙자료 제출
6. 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신청기관은 지원사업의 요구사항 및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3장 지원신청 및 평가절차 등

**제11조(사업공고)** 관리기관이 공고하는 지원계획에는 당해 지원사업의 지원분야, 지원규

모, 지원조건 및 방식,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등이 포함한다.

**제12조(지원신청)** ① 본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하는 기관 등은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작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0.>

② 공동제작사업의 경우에는 신청기관과 공동제작기관의 제작사업 공동시행에 대한 참여 의사를 표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작성내용)** ① 신청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및 제반사항을 갖추어 접수하여야 한다.

1. 신청서 ※제작계획서 동시접수 가능
2. 제작 계획서, 광주광역시내 촬영내용 등 공고 시 첨부된 서류일체
3. 배급확인서(계약서) 또는 편성확인서(계약서) 사본, 투자계약서 사본, 원작(작가)계약서 사본, 감독 계약서 사본, 주연배우계약서 사본 등 평가를 위해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신청기관의 작품에 관련한 서류 일체. 단 관리기관은 필요시 원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4. '사후지원금'의 결과보고서는 작품의 광주광역시내 제작비 소비액에 대한 공인회계 정산보고서 및 정산내역과 증빙자료, 기타 가산점 관련 자료 등

5.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 또는 영화제작신고필증 사본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2조의 규칙에 의하여 선정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서, 제작계획서 또는 결과 보고서 등의 작성내용을 달리 정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지원 의향의 통보 등)** 관리기관은 신청기관에게 지원 의향 결과를 진흥원 또는 사업 관련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필요시 서면으로 통보 한다.

## 제4장 협약체결 등

**제15조(협약체결)** ① 관리기관은 선정된 신청기관과 소정의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 하되, 그 내용에는 사업성과의 활용 및 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 된다.

② 협약의 체결 시까지 제출, 검토 완료 되어야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협

약의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1. 신청서 및 제작계획서 (※사전접수)
2. 기타 관리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신청기관의 작품별 협약서에 기재)

**제16조(협약의 변경)** ① 관리기관은 신청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작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신청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협약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17조(협약의 해약)** ① 관리기관은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협약의 해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칙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관리기관은 제23조의 규칙에 따라 이미 지급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신청기관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 지원사업의 신청기관, 책임자 등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신청서 및 제작계획서 등 제출 문건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2.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작을 계속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장 시행관리 및 평가 등

**제18조(시행관리)** ① 신청기관은 제15조의 규칙에 의한 협약에 따라 제작계획 및 결과보고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신청기관에게 ‘사후지원금’에 대하여 협약기간 동안 광주광역시내 제작비 소비액 내역 및 증빙자료에 대하여 관리기관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하여 공인회계감사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 감사 수수료는 신청기관이 부담하되 광주광역시 내 제작비 소비액에 포함할 수 있다.

**제19조(결과보고)** ① ‘사후지원금’의 결과보고는 신청기관이 지정한 기간 내에 광주광역시

역시내 제작비 소비액에 대한 정산보고서와 광주광역시내 제작비 소비액 증빙자료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제작계획 또는 촬영상황 등 작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신청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후지원금’에 대한 결과보고는 공인회계감사를 통한 정산보고서 및 정산내역, 광주광역시내 순수제작비 소비액 증빙 사본
2. 기타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③ 관리기관은 제1항 규칙에 의한 결과보고서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신청기관 또는 책임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개정 2024. 11. 13.> ① 관리기관은 협약내용 이행에 관한 중간평가가 필요할 시 지원신청서 및 제작계획서 등 제출자료에 의거 평가위원회를 거쳐 ‘성실’, ‘불성실’의 2등급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② 또한 관리기관은 협약내용 이행에 관한 최종평가가 필요할 시 1항의 중간평가와 제15조의 협약 및 제18조의 시행관리에 따라 ‘사후지원금’은 공인회계 정산보고서 및 광주광역시 내 제작비 소비액 증빙자료의 평가를 거쳐 최종 종합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성공’, ‘실패’의 2등급으로 평가하여 신청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관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재평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한다.

④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불성실시행’ 및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한 재평가 결과가 ‘실패’로 평가된 신청기관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정 2024. 11. 13.> ① 진흥원장은 선정평가, 중간평가, 결과평가 등 각 평가단계별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선정 평가위원회 구성은 홈페이지 전문가풀에 등록된 위원 중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3배수 이상의 후보군을 구성하여 진흥원장의 승인을 득하고 무작위 추출방식을 통하여 섭외한다. 위원회 인원은 7인 내외로 구성하나 제1항의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 ③ 중간평가, 결과평가 위원회 구성은 선정평가위원회 풀에서 구성한다.
- ④ 진흥원장은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제2항에 의한 평가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위원을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의 호선으로 외부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
- ⑥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관부서의 인원 중 1인을 간사로 정한다.
- ⑦ 간사는 평가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취할 수 있다.
- ⑧ 진흥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평가하게 할 수 있다.
- ⑨ 평가위원회는 찬성, 반대 2단계로 의결할 수 있는 안건일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진흥원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⑩ 위원회의 참석수당은 진흥원의 수수료지급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 제6장 지원금액 산정 및 평가기준 등 <개정 2024. 11. 13.>

- 제22조(지원비 산정기준)** ① ‘사후지원금’ 산정의 기준 비목은 신청기관 작품의 광주광역시내 촬영 및 제작에 소요된 순수제작비 소비액으로 구성한다.
- ② 광주광역시내 소비 내역으로 인정되는 산출근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작품 제작관련 항목들로서,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제작예산서 항목을 산출근거로 한다. 단, 비예산 항목 혹은 추가 예산 항목 중 광주광역시내 소비내역으로 인정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의 장이 별도로 확인 지정한다.
1. 광주지역에서 소비한 장비임차료, 숙박비, 식비, 시설 대관료, 장비 대여료, 진행비, 차량임차, 사무용품 구입비, 유류비 등 본 촬영 및 후반작업에 소요된 제반비용의 4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후반작업에 소요된 비용은 전체 지원금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2. 동일한 작품이 관리기관의 타 사업과 중복 지원될 경우, 사후지원금에서 타 사업의 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3. 광주지역의 산업 육성을 위해 위탁기관의 요구와 합의가 있을 경우 산정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 ③ 관리기관은 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비목별

산출근거에 대한 포함대상 비목과 제외대상 비목 등의 세부조건을 수정 또는 추가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지원금의 지급)** ① 관리기관은 신청기관에 ‘사후지원금’ 결과와 지역 내 소비액 증빙자료의 감사와 평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 한다. 다만, 지급비율·시기·방법 등을 달리 하여야 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협약서에 명시하여 정한다.

② 관리기관은 지원규모 및 세부산정기준을 광주광역시 영화드라마 제작지원 사업 예산 편성 기준, 환경, 지원 작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과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결과보고서 및 영수증 증빙심사의 제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신청기관은 제20조 최종평가 결과 통보에 따라 관리기관에 지원금의 지급을 요청해야 하고 그에 따라 관리기관은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관리기관의 장이 신청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 제7장 사후관리 등

**제24조(사후관리 및 환수금 징수)** <개정 2024. 11. 13.> ① 관리기관은 지원금 내역의 관리 및 증빙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사후에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1항에 따른 사후 평가 결과 또는 제17조 2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신청기관으로부터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환수금 비율 및 방법은 별표1과 같다.

## 제8장 보칙

**제25조(면책)** 위탁기관 및 관리기관은 본 사업에 의해 지원되는 영화드라마의 제작 및 방영 또는 개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6조(비밀준수)** 이 규칙에 의하여 지원사업의 시행 및 관리·평가에 참여하는 자는 지원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청기관은 지원사업에 관련된 자료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27조(적용특례) ① 관리기관은 본 지원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별도의 협약 및 시행관리지침 등을 정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부 칙(2024. 3.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9.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1.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제재대상 사유별 제재조치 [제24조]

제재대상사유	제재조치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지원금 지급 확정으로 선정 된 경우	기 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결과 보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기 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회계감사보고 및 영수증 원본 대조 요구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결과를 허위로 보고 하였을 경우	기 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신청기관 작품이 미디어(지상파 또는 CATV 등)를 통한 방영 또는 극장을 통한 개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 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